

# 2025

## 안전 · 환경

### 교육과정 / 사업안내



교육원 QR



(재)환경안전교육원

## 인사말

### 환경안전교육원은

Korea Environmental and Safety Institute

환경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환경·안전분야 진단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입니다.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기관은  
고객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교육원 임직원 일동



# 목 차

## 제1장 교육안내

### **직무·안전보건교육** ----- 03

#### · 직무교육 ·

-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 04
- 0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05
- 0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06
- 0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보수) 07

#### · 안전보건교육 ·

- 0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조업 및 서비스업) 08
- 06.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08
- 07. 법정의무교육 09

### **안전·보건·환경 전문화교육** ----- 10

- 01. PSM 입문과정 11
- 0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전문화과정 11
- 03.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구축방안 12
- 04.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시설 교육 12

## 제2장 사업안내

### **환경안전분야** ----- 14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5
- 0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6
- 0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17
- 0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 18

### **산업안전분야** ----- 19

- 01. 안전관리위탁전문기관 20
- 0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1
- 0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22
- 04. 공정안전보고서 23
- 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4
- 06. 위험성평가 25
- 07. 자율안전확인신고 26
- 08. 방폭안전진단 26
- 09.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27

# 제1장 교육안내

직무·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환경 전문화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직무·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에 의해 해당하는 지위에 선임된 사람이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01. 안전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혼합교육**
0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혼합교육**
03.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0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05.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06.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07. 법정의무교육

### ⊕ 직무 및 안전교육 신청 방법

- 직무교육 신청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dutycenter.net)
-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 환경안전교육원(koesti.or.kr)
- 위험성평가 교육 신청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각 교육에  
해당하는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교육신청  
선택

수강신청  
진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신규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 경영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6시간/1일(09:00~16:00)
	혼합교육* : 안전보건공단 온라인교육 2시간 수료 후 4시간 집체교육 실시(건설업 한정)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최초 선임된 자(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교육내용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으로 리더십과 안전경영방법을 교육하여 사업장 내 효과적인 안전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6시간/1일(09:00~16:00)
	혼합교육* : 안전보건공단 온라인교육 2시간 수료 후 4시간 집체교육 실시(건설업 한정)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이수)
교육내용	- 산업 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Q & A

**Q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

**Q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선임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Q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혼합교육\*은 무엇인가요?**

**A** 혼합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말하며, **건설업종에 한하여**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온라인교육 2시간 수료 후 4시간을 집체교육으로 실시합니다.

**Q4 혼합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의 직무교육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 신규교육

» 안전관리자 직무와 역할에 필요한 기초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가능토록 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34시간/5일
	혼합교육* : 안전보건공단 온라인교육 10시간 수료 후 24시간(3일) 집체교육 실시(건설업 한정)
교육대상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선임 후 3개월 이내 이수)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개론에 관한 사항</li> <li>-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li> <li>-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24시간/3일
	혼합교육* : 안전보건공단 온라인교육 8시간 수료 후 16시간(2일) 집체교육 실시(건설업 한정)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이수)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Q & A

**Q1** 안전관리자 혼합교육\*은 무엇인가요?

**A** 혼합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말하며, **건설업종에 한하여**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온라인교육 수료 후 남은 시간에 대해 집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 온라인(10시간, 집체(24시간)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온라인(8시간), 집체(16시간)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 신규교육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 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34시간/5일
교육대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위탁업무 신규 종사자(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개론에 관한 사항</li> <li>-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li> <li>-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24시간/3일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이수)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0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8시간/1일(09:00~18:00)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이수)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li> <li>-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Q & A

#### Q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A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종 :

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 Q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A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Q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 A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Q4 상시근로자수 산정

A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시간	16시간/2일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및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 사례 및 실습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

관계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교육시간	16시간/2일
교육대상	위험성평가 업무 담당자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실시 규정·기법·사례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업종별 위험성평가 및 실습

### Q & A

#### Q1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A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 해당 지침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교육시간의 16시간은 이론 8시간·실습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Q2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여부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각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구분	교육명	세부내용	
1	성희롱 예방교육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횟수	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개념·발생원인을 이해하여 사건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올바른 절차에 대한 교육 과정
		과태료	최대 5백만원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계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항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횟수	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 과정
		과태료	최대 3백만원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대상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근로자
		교육횟수	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과정
		과태료	개인정보유출 시 최대 5억원
4	퇴직연금 교육	관계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교육대상	사업장 내 연금가입 근로자
		교육횟수	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투자 운용에 대한 기본 지식 등에 대한 교육 과정
		과태료	최대 일천만원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계법령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교육대상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교육횟수	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법 및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
		기타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환경 전문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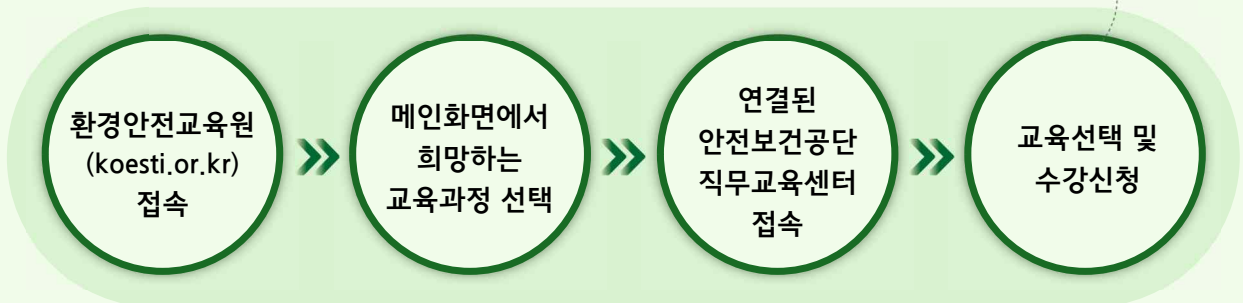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 분야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01. PSM 입문과정
- ▶ 0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전문화과정
- ▶ 03.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구축방안
- ▶ 04.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시설 교육

### 수강신청

전체	찾으실 과정명을 입력하세요.					🔍	
상세 선택							
지역	전체	유형	전체	대상	보수교육면제자(전)	신규 여부	전체
교육기관	재단법인 환경안전	교육 희망월	전체	과정명			
교육분야	전체	접수상태	전체	교육상태	유지	혼합과정 여부	전체
신청 시작일 자		신청 종료일 자					

### + 전문화교육 신청 방법





## PSM 입문과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공정안전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입문과정

교육시간	16시간/2일
교육대상	PSM 대상 사업장 생산·기술 및 안전보건관계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M 도입배경 및 향후 방향, PSM 관련 법규 해설</li> <li>•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및 작성법</li> <li>• 공정도면의 개요 및 이해</li> <li>• 공정위험성 평가 개론 및 평가방법</li> <li>• 안전운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운전계획</li> <li>- 구성요소별 작성방법</li> </ul> </li> <li>• 공정 업종 우수사업장 운영사례</li> </ul>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전문화 과정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기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분석·정밀평가 능력 배양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

교육시간	24시간/3일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등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질환의 이해</li> <li>• 근골격계질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질환의 의학적관리 및 국내외 연구동향</li> <li>- 근골격계질환 예방 우수 사례</li> </ul> </li> <li>•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개론 및 방법</li> <li>- 인간공학 정밀평가도구의 이해1</li> <li>- 인간공학 정밀평가도구의 이해2</li> <li>- 유해요인조사 실습 및 개선대책</li> </ul> </li> </ul>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 안전문화 구축관리를 위한 과정

교육시간	6시간/1일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이수희망자 등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li> <li>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li> </ul> </li> <li>사업주의 임무와 역할</li> <li>중대재해발생시 대응 방안</li> </ul>



## 유해·위험물질 취급시설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유해·위험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취급시설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

교육시간	16시간/2일
교육대상	유해·위험물질 취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이수희망자 등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유해·위험물질</li> <li>유해·위험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li> <li>화학공장의 관리기준</li> <li>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li> <li>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질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li> </ul> </li> </ul>

### Q & A

- Q1**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면제가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Q2**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면제가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에 대하여 이수해야 할 기간 내에 전문화교육과정을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기간 내에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보수교육 시간 이상일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 제2장 사업안내

환경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안전분야

-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 0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취급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이유로 총괄 영향범위가 미확대 시 제출하는 서류
- ▶ 0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
- ▶ 0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방환경관서에 영업허가를 받는 제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01 제출대상 사업장

1군 사업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사업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02 작성·평가 수량 기준

구분	분류	기준	
		규정수량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개요도		<p>사업장 기준      계획서 작성 내용</p>	<p>단위설비 기준</p>
	산정기준	<p>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li> </ul>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li> <li>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li> </ul>

## 03 제출 시기

신규제출	제출시기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변경제출	제출시기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li> <li>1.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li> <li>2.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li> <li>3.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li> <li>4.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li> <li>5.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li> </ul> <p>※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p>
재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li> <li>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li> <li>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작성 규정 제11조)</li> <li>▶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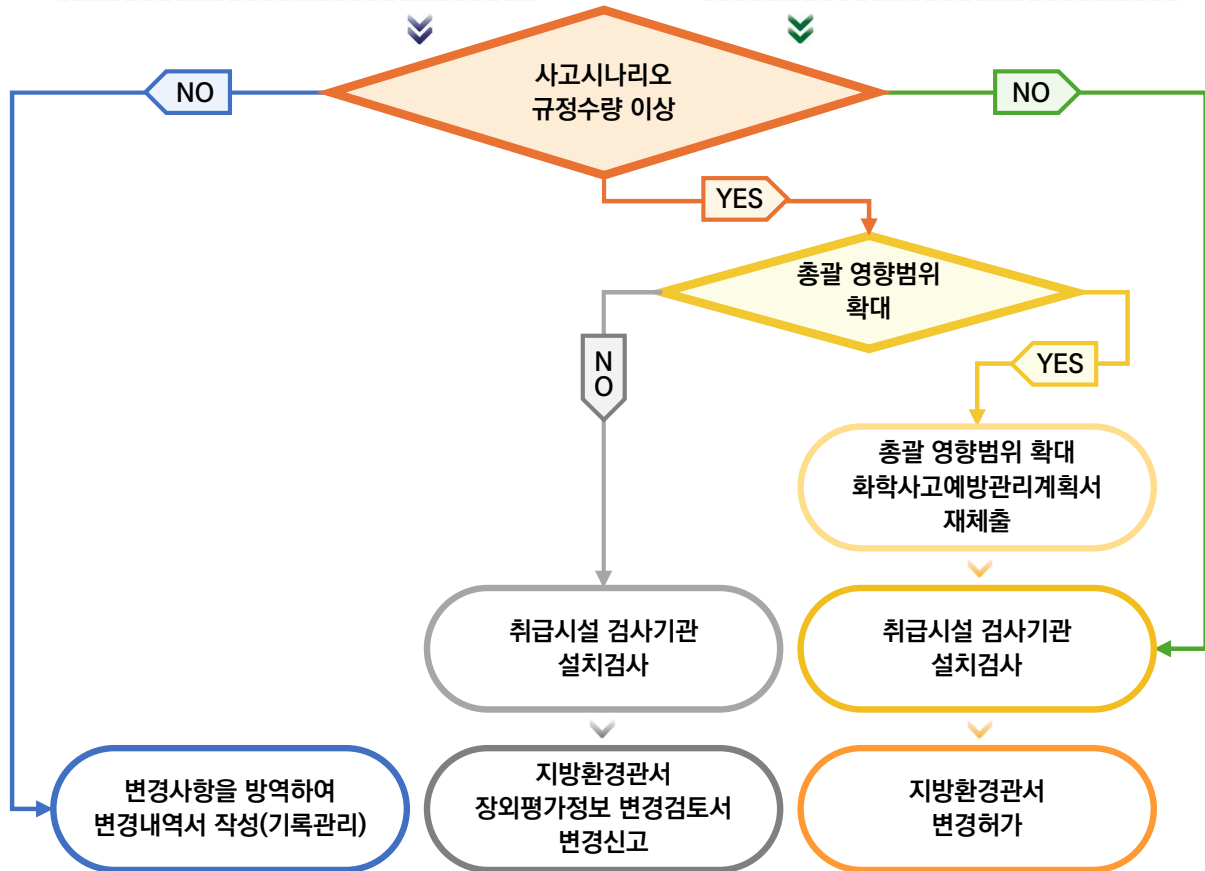


# 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

## 01 제출대상 사업장

- 취급시설 신설 또는 증설
- 취급시설 위치변경 또는 실내 조건 만족 못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함량, 농도 변경

- 유해화학물질 변경 또는 추가



※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제9조 및 제19조 관련)

성상	유해성 분류	규정 수량
고체	유해성 구분 없음	2,000kg
액체	유해성 구분 없음	400kg
기체	독성구분*1	5kg
	독성구분 2	5kg
	독성구분 3	100kg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
- 독성 구분이 없는 기체의 경우 독성 구분3의 규정 수량을 따른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01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시기/주기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 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수시 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 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안전 진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등급	결과 없는 경우	매 4년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 02 검사기관

기관명	관할구역
한국환경공단	전국 ( <a href="https://www.safechem.or.kr/">https://www.safechem.or.kr/</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 <a href="https://www.kosha.or.kr/cheminsp/">https://www.kosha.or.kr/cheminsp/</a>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 <a href="https://cyber.kgs.or.kr/">https://cyber.kgs.or.kr/</a> )

## 03 검사방법

-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 검사 실시

## 04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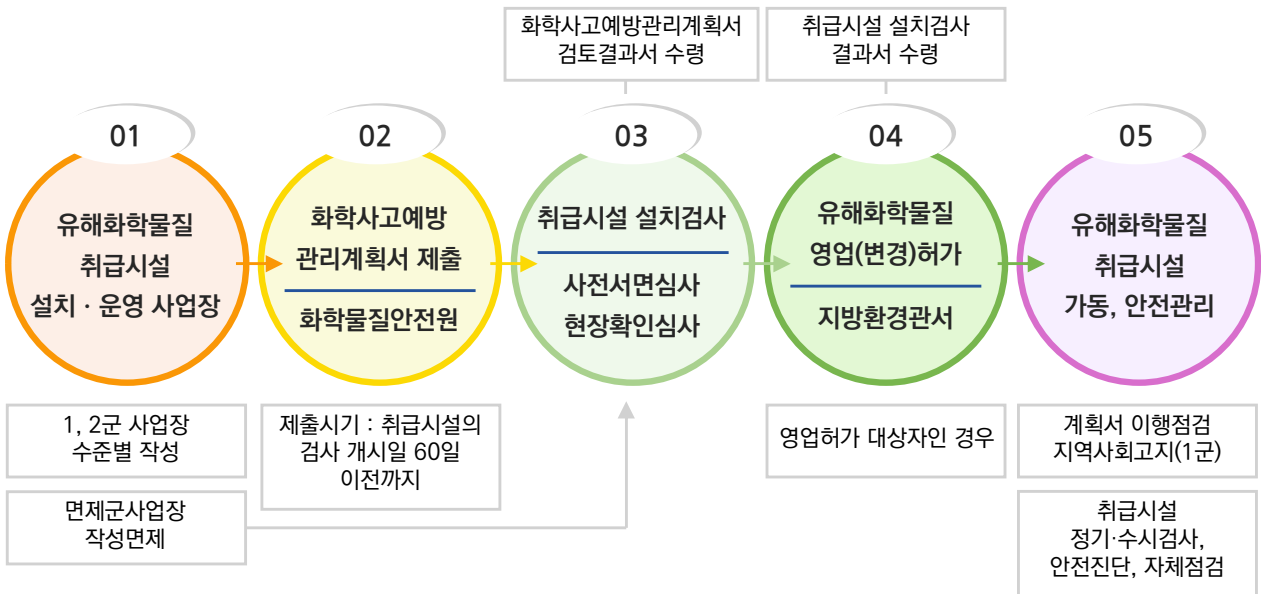
## 0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0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0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 흐름도



## 04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50% 이상)</li> <li>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50% 이상)</li> <li>3) 허가받은 유해물질 품목추가</li> <li>4) 장외평가정보 변경(총괄영향범위 확대 시)</li> <li>5)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li> </ol>
변경신고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li> <li>2) 장외평가 정보 변경(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시)</li> <li>3) 운반차량의 종류, 수량, 용량이 증가한 경우</li> <li>4) 기술인력 변경</li> </ol>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분야



- ▶ **01. 안전관리위탁전문기관**  
전문지식과 기술력 바탕으로 안전전문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 **0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 ▶ **0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실천하기 위한 제도
- ▶ **04.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 ▶ **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 **06.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 **07.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 **08. 방폭안전진단**  
전기 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가스, 증기,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 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
- ▶ **09.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



# 안전관리위탁전문기관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02 안전관리 위탁 수행 업무

수행업무	세부 내용
사업장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2회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li> <li>• 사업장 안전조치 기술지원</li> </ul>
사업장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li> <li>• 작업별 특별안전교육</li> <li>•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li> </ul>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li> </ul>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li> <li>•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 제공</li> <li>•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관리</li> </ul>

## 03 위반사항 법적 제재 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이상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04 산업안전관리 업무 위탁 수행 절차



### 01 안전보건경영이란?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체제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

### 02 인증심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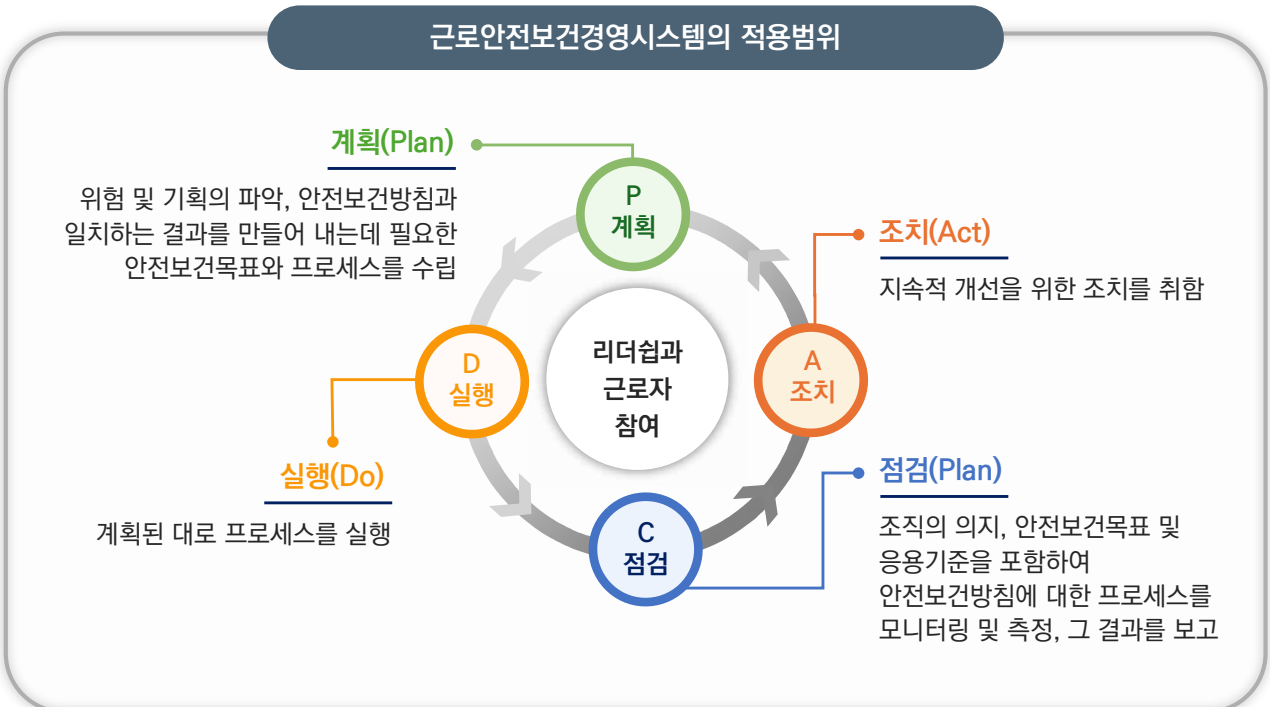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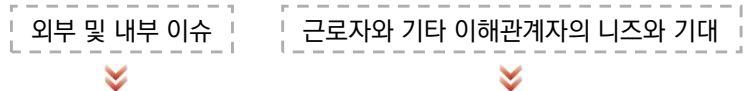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은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 03 인증취득효과

-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 내·외부 고객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04 주요 과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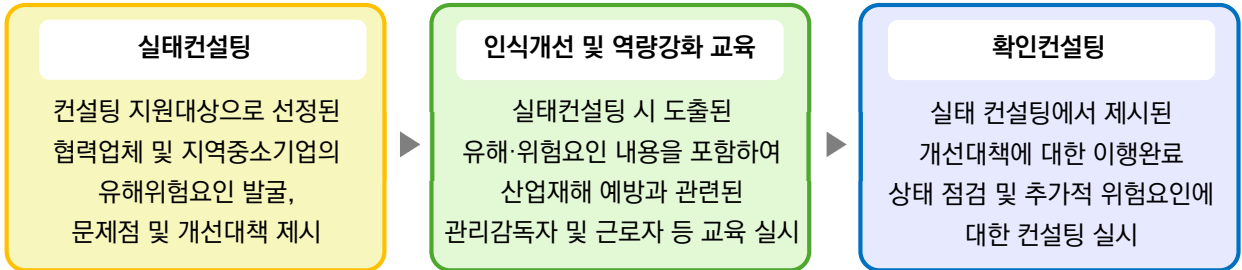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01 사업목적

-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각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02 컨설팅 수행절차



## 03 컨설팅 실시기준

실태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1조로 3~5일 실시(「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기준 적용하여 컨설턴트 2인 중 '고급기술자'등급 이상의 1인 참여)</li> <li>- 컨설팅 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 당 5시간 이상 실시</li> </ul>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를 교육 강사로 필수 지정</li> <li>- 실태컨설팅 이후~확인컨설팅 이전 시기에 1회 실시</li> </ul>
확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1조로 2~3일 실시</li> <li>- 컨설턴트 기준 및 컨설팅 실시 시간은 실태컨설팅 기준과 동일</li> </ul>

## 04 주요 과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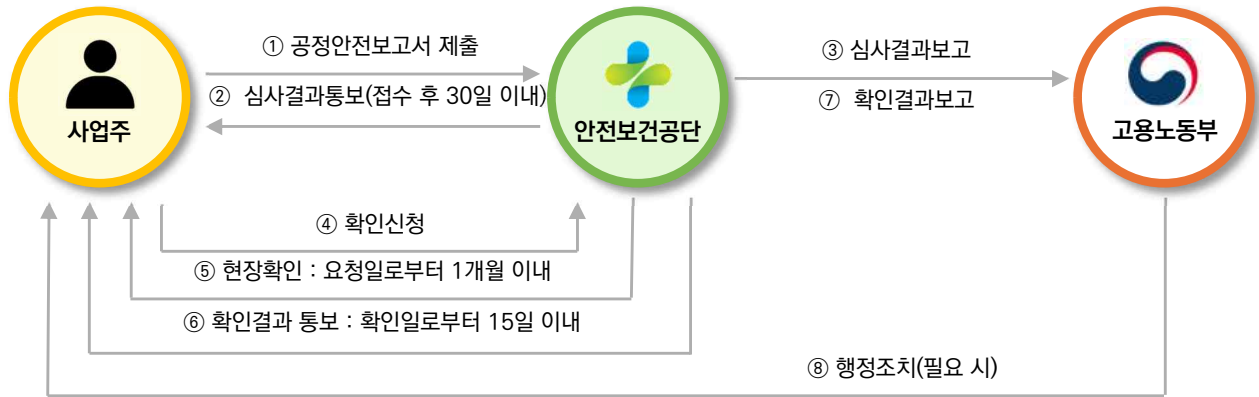
컨설팅 과제명	세부 내용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지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분야(3대 사고유형·8대요인) 중점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폭발위험(인화성·분진 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및 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및 유해가스 측정 등
공통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내용 포함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li> <li>-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재해예방에 기여</li> </ul>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02 심사 및 확인 절차



## 03 컨설팅 실시기준

제출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착공일 30일 전
제출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별지 1호 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a href="http://www.kosha.or.kr">www.kosha.or.kr</a> )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 관련 법령,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집 등 제공

## 0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업종	업종분류 코드	업종	업종분류 코드
원유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출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제로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049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13,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 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 설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2 심사 및 확인 절차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03 대상설비(5종)

<b>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b>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b>화학설비</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 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b>건조설비</b>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또는 최대소비전력이 50kw/hr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b>가스집합용접장치</b>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b>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b>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배풍량이 60m³/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배풍량이 150m³/분 이상)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고 ❖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참고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참고

## 04 제출자 및 제출시기

<b>제출주체</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b>제출시기</b>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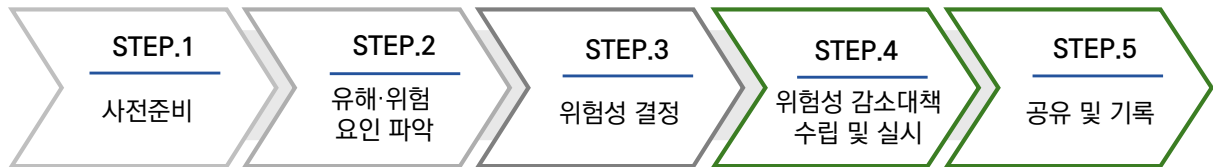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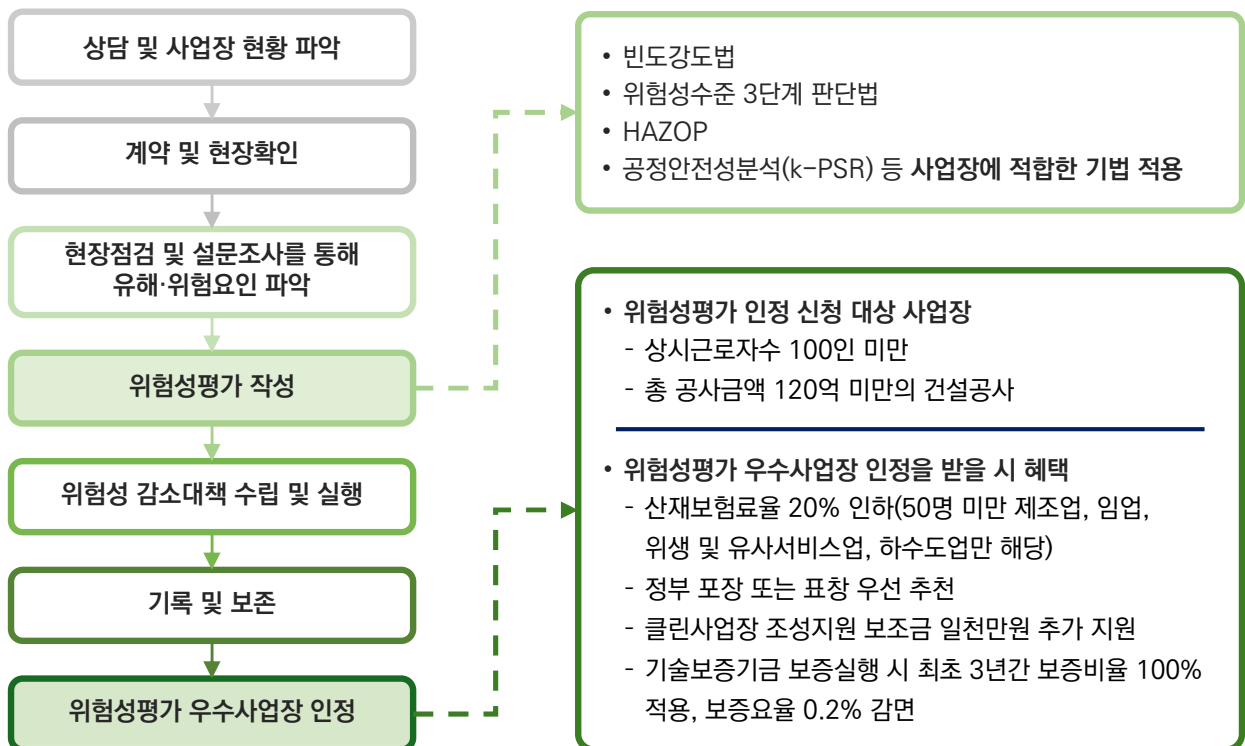
## 0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03 위험성평가 절차



## 04 위험성평가 컨설팅





## 자율안전확인신고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02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03 신고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04 신고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기계/설비	연삭기/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등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보호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방폭안전진단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02 제출대상

- 전기설비의 방폭(폭발방지)이란 전기 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것

### 03 대상

- 기 설치된 방폭 설비 진단
- 신설하고자 하는 방폭 설비에 대한 진단 및 시공 감리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04 방폭진단의 내용

- 산업표준화법 KS C IEC 60079-10-1에 따른 폭발위험지역 구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0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02 근골격계질환이란?

-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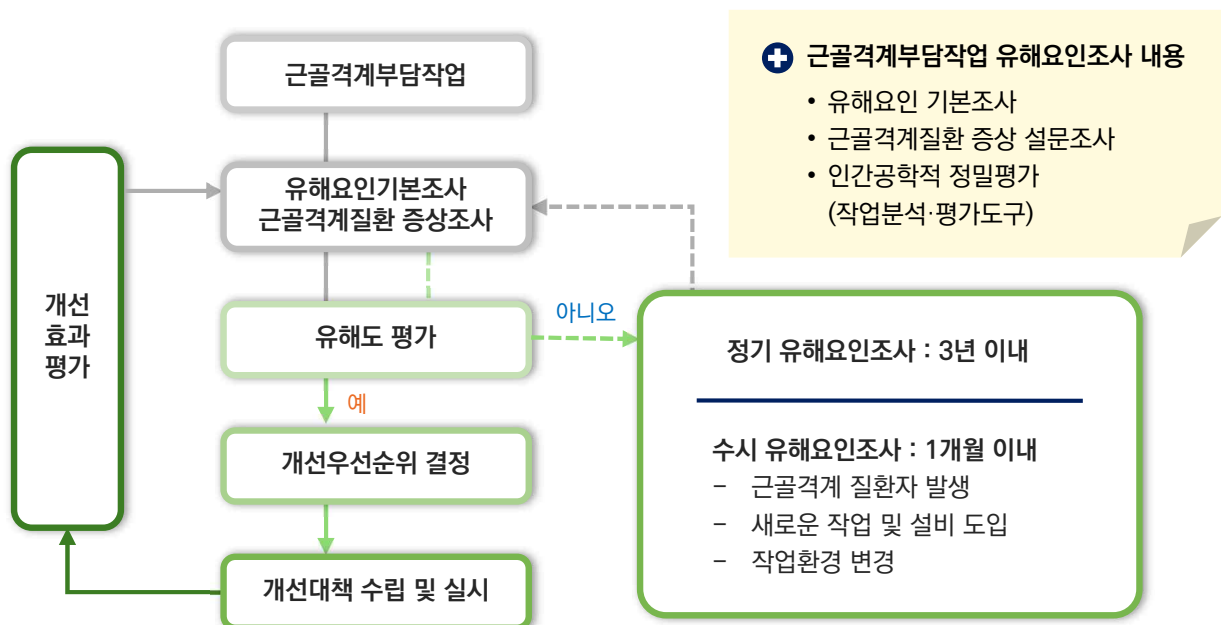
## 03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b>작업장 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절한 작업공구</li> <li>• 작업장의 설계 의자, 책상 등</li> </ul>	<b>환경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동</li> <li>• 조명</li> <li>• 온도 등</li> </ul>
<b>작업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자세</li> <li>• 반복성 등</li> </ul>	<b>작업자 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 신체조건, 경력</li> <li>• 작업습관, 과거병력 등</li> </ul>

## 04 유해요인조사 시기

<b>정기 유해요인조사</b>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b>수시 유해요인조사</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0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절차



# 2025년 환경안전교육원 연간교육일정

구분	교육명	교육 정원	교육 일수	교육 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안전 보건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건설업]	70	1	6	20, 23	5, 7	5, 6, 27	24	14, 19	9	16	28	5	30	21	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건설업]	70	1	6	21	6, 14	5, 7, 28	25	14			29		31		1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제조/기타]	70	1	6		25		7			17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제조/기타]	70	1	6		24			20			22				27	
	안전관리자 신규교육[건설업]	70	5	34				17~21		23~27	1~3, 21~25				20~24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건설업]	70	3	24		26~28		28~30	12~13, 26~28			25~27			27~29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기타]	70	5	34							16~20			15~19		3~7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제조/기타]	70	3	24		17~19		21~23			3~5	8~10		1~3		17~19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70	5	34	13~17			14~18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70	3	24		10~12										24~26	15~17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70	1	8		13			29		11		4	16	2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조업]	70	2	16				1~2	15~16				24~25	14~15		8~9, 22~23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제조업]	40	2	16		20~21		10~11		12~13	14~15	20~21	8~9			1~2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건설업]	40	2	16					8~9	10~11			22~23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서비스업]	40	2	16											10~11		
안전·보건· 환경 전문화교육	PSM 입문과정	40	2	16									10~11				
	근로계절환 예방관리 전문화교육	40	3	24					21~23						12~14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구축방안	40	1	6					30						28		
	유해 위험물질 취급시설 관리	40	2	16													3~4

❖ 상기 교육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요정시 사업장별 출장교육이 가능합니다.

\* **안성교육(경기도)**

**통합교육 : 건설업(안전관리자 신규·보수)**

**안성 + 통합교육 : 건설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 오시는 길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76, 부산건축자재유통단지 6동 204호

**지하철** 김해경전철 [서부산유통지구역 - 1번 출구] 이용

**대표전화** 1800-8133

**팩스번호** 070-7611-6133

**이메일** aestiz99@gmail.com

**홈페이지** www.koesti.or.kr

교육원 사이트 바로가기



 (재)환경안전교육원